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과 ‘사상부(思想部)’의 설치*

정 병 옥**

1. 과제와 자료 현황
2. 기록의 생산자와 분산 경위
3. 서무기록을 통해 본 ‘사상부’의 설치와 정보수집 체계
4. 기록 명칭에 대하여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주요 논저 : 『한국근대금융연구』(2004),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공저, 2013), 『식민지 불온열전』(2013).

▪투고일 : 2014년 3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4년 3월 28일 ▪계재확정일 : 2014년 4월 25일.

[국문초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 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성지방법원 재판 기록'(A)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B)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접수 또는 작성하여 보관한 동일한 기록군이다. 'A'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 'B'는 동 검사국의 서무기록이며,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기록은 동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사상' 탄압·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편철자명이나 열람자·보고자명, 접수문서의 분류로 보건대, 생산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思想部)'인 것 같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에는 1925년 치안유지법 시행과 1928년 사상계 검사 배치, 사상부 설치라는 변화 과정이 담겨 있다. 이전에 비해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인 정보 보고가 많아졌고, 내용이 사상에 집중되었다. 사상 정보는 일반 민정(民情)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가 이뤄졌다. 이제 검찰의 사무는 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뉘지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전 조선과 일본의 지방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고, 간도관련 정보의 수집이 늘었다.

주제어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 사상계(思想係) 검사, 사상부(思想部), 사상 탄압

1. 과제와 자료 현황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이하 '아연'으로 줄임)는 '구 조선총독

부 경무국 항일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을 소장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으로 줄임)는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세 기록이 동일한 조직이 생산한 기록군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막연하나마 감지되었다.¹⁾ 다만 여러 생산자명과 명칭이 혼용되었으며, 기록 분산의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편의 '경성지방법원 재판문서'는 논의였다.²⁾

필자는 2011년 7월 1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도시샤코리아연구소(同志社コリア研究センタ)가 공동 주최한 '서울-교토 상호방문 국제학술회의 : 식민지연구의 최전선'(장소 : 일본 교토)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형사사건기록'과 식민지 사회"란 제목으로 발표했고, 이를 약간 보완하고 축약하여 2013년 출판한 책 『식민지 불운열전』(역사비평사)에 '보론'으로 실었다.³⁾ 이를 통해 위의 세 기록이 동일한 기록군이며, 그 생산주체는 기록군의 '사건기록' 위반범으로 판단컨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상계(思想係) 쪽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기록학의 '생산자' 개념과 기록군 중 '서무기록' 분류 및 분석을 통해 기록 생산자를 좀 더 분명히 하고,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분산 경위를 밝힘으로써 다음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서무기록을 통해 생산자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생

-
- 1) 박건홍, 「조선총독부 기록의 관리의 이용-경무국 재판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기록사료관리와 근대』, 진리탐구, 2005; 박성진·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 2007, 역사비평사, 358-360쪽.
 - 2) 이애숙은 이관술 등의 동일한 사건기록이 아연과 국편에 분산 소장되었음을 지적하였다(이애숙, 「일제 말기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한국사연구』 제126호, 2004.9, 207쪽) 국편의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과 아연 소장자료가 동일한 기록군일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나, 기록의 역사는 이 논문의 주된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 3) 정병욱, 『식민지 불운열전-미친 생각이 뱃속에서 나온다』, 역사비평사, 2013, 215-228쪽.

산자인 사상검사와 사상부에 관해서는 제도와 인물을 통해 접근한 장신,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연구가 있다.⁴⁾ 그런데 기록은 그 생산자에 대해서 적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기록에는 ‘사상’ 탄압·통제의 지휘부가 형성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가 담겨 있다. 이 글은 사상검사, ‘사상부(思想部)’에 대한 기록을 통한 접근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 기록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해두겠다. 아연 소장의 ‘구 조선총독부 경무국 항일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이하 ‘아연 자료’로 줄임)은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한적실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⁵⁾ 아연의 해체에 따르면 총 147권 약 13만쪽이나 약간의 누락이 있다. 해체에 부여된 번호와 ‘문서절명’으로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⁶⁾ 이글에서도 이 기록을 지칭할 때 이 번호를 붙여 ‘아연 ○○’로 하겠다. 이 자료의 일부는 金俊燁·金昌順 共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編 I~II』,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79~1980로 출간되었으며, 김경일 편,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총 10권)』(永進文化社, 1992)으로도 영인됐다.⁷⁾ 자료 전체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되어 일본 雄

4) 장신,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 19, 1998; 水野直樹, 「植民地期朝鮮の思想檢事」, 『International Symposium 30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7; 水野直樹, 「思想檢事たちの「戦中」と「戦後」- 植民地支配と思想檢事-」, 松田利彦·やまだあつし編,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5) 역사성과 인지도를 감안하여 이글에서는 종전처럼 ‘아연 소장’ ‘아연 자료’라 하겠다.

6)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稀貴文獻 解題-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秘密紀錄-』, 高麗大學校出版部, 1995의 「序文」. 또한 아연에서 여러 권을 합본한 경우가 더러 있고 누락본이 있어 아직 원자료의 전체 ‘건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글에서는 아연의 해체에 따라 ‘권’과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7) 이 자료집은 金旻一 編,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集』(총 10권), 한국학술정보, 2002와 동일하며,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松堂에서 “旧朝鮮總督府所藏 朝鮮人抗日運動調查記錄”이란 이름으로 판매했다.⁸⁾ 또한 ‘아연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anet.go.kr>)에서도 원문 서비스를 한다.⁹⁾

국편이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한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 (이하 ‘국편 자료 A’로 줄임)은 총 “656”건, “1,119”책, “48만 매”로 시기적으로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로 나뉘는데,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부분(전체 건의 80%, 전체 책의 89%)만 다루겠다.¹⁰⁾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가능하며, 일부가 탈초 번역되어 원문과 함께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70, 國史編纂委員會, 1986~1997으로 간행되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 권의 해제집이 간행되었다.¹¹⁾ 또한 적은 분량이지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시대별 > 일제강점기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 일제하 사회·사상운동자료에 9건이 텍스트로 서비스되고 있다. 글에서 이 자료를 인용할 때는 마이크로필름 번호를 사용하겠다.

국편이 1996년 대검찰청에서 수집한 ‘경성지방법원(검사국) 편철문서’¹²⁾(이하 ‘국편 자료 B’로 줄임)는 총 300건(해방 전 286건, 해방 후 14건)으로 이 글에서는 해방 전 기록만 다루겠다. 청구기호 “367.2 대13”의 자료로 건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됐다. 글에서 이 기록을 언급할 때 이

-
- 8) 시작 화면에는 “稀貴文書마이크로필름集－朝鮮總督府所藏 朝鮮人抗日運動調查記錄－, 1993,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라는 정보가 나온다.
 - 9) 다만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본 雄松堂의 마이크로필름으로 스캔 작업을 했기 때문인 듯하다.
 - 10) 서울地方檢察廳記錄管理課, 「獨立運動關聯記錄 등 整理記錄目錄」, 1984 : 정병욱, 『식민지 불온열전』, 218쪽.
 - 11)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 I~II』, 국사편찬위원회, 2007~2008;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 해제』, 2009.
 -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일제강점기 > 국내외항일운동문서의 해제 목록에는 “일제 경성지방법원 편철문서”로, 해제 본문의 제목은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編綴文書”로 되어 있다.

번호를 써서 ‘국편 자료 B ○○’ 또는 ‘국편 ○○’으로 쓰겠다.¹³⁾ 이 자료의 일부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시대별 > 일제강점기 > 국내외항일운동문서의 ‘국내 항일운동자료’ 및 ‘국내 경제관련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또한 복사본(청구기호 한367.2 대13)과 마이크로필름으로도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기록의 생산자와 분산 경위

외관상 세 가지 자료의 연관성은 뚜렷하다. 우선 ‘아연 자료’와 ‘국편 자료 A’를 비교해보자. ‘아연 자료’의 약 절반가량은 보통 ‘신문조서’라 명명된 기록이다(총 147권 중 79~143권 145권~147권까지 합 68권, 전체의 46%). 이는 특정 피의자 또는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사의 수사 자료 및 각 법원의 공판 자료로, 검경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문조서’로 이름 붙인 것 같다. ‘재판기록’으로 명명된 ‘국편 자료 A’도 동일한 양식의 기록이다. 그 중에는 같은 피의자 또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뉘어 소장된 경우도 있다. <그림1>은 1941년 체포된 사회주의계열 운동가 이관술(李觀述) 등의 ‘치안유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기록 표지이다. 좌측은 ‘국편 자료 A’이고 우측은 ‘아연 자료’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양식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그림 설명 참조). 이관술 등의 사건기록은 국편에 제2책, 제18책, 제19책, 별책 제2책(追送記錄), 아연에 제5책, 제11책, 제13책이 소장되어 있다.¹⁴⁾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양쪽에 나뉘어 소장된 경우로 이관술

13) 다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http://library.history.go.kr/>에서 청구기호 “367.2 대13”으로 검색하면 자료 전부가 검색되지 않는다.

14) 1941년 이관술 등의 치안유지법위반 등 사건은 일련번호로 볼 때 최소한 21책 이상의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애숙, 「일제 말기 반파시즘 인민전선

등의 사건 외에도 1929년 진홍거(陳鴻巨) 등, 1929년 홍승유(洪承裕) 등, 1931년 김낙준(金洛俊), 1931년 강문수(姜文秀) 등, 1934년 權榮奎 등의 사건이 있다. 따라서 ‘아연 자료’와 ‘국편 자료 A’는 현재 소장기관에서 부여한 명칭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록군으로 언젠가 분산된 것이라고 추정할 있다.

〈그림 1〉 이관술 등의 ‘치안유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기록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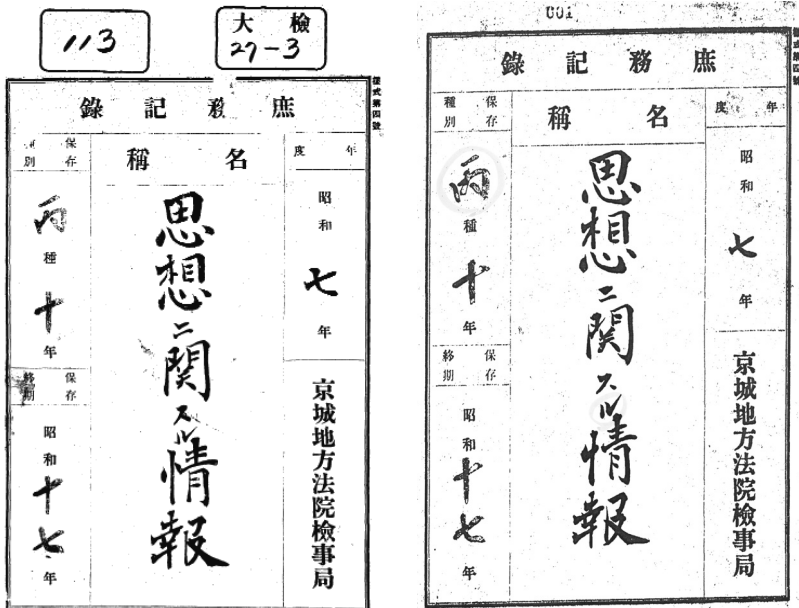


* 설명 : 좌측은 ‘국편 자료 A’(마이크로필름 출력본), 우측은 ‘아연 자료’(원본 촬영본)이다. 같은 양식이며 ‘사건표목’ ‘주임’ ‘피고인’ 등에 기입한 내용과 필체 및 여러 날인이 동일하다. 상단 날인으로 볼 때 좌측은 제2책, 우측은 제5책이다. 다만 기록호 중 ‘形公第六九九’의 연도가 좌측은 “昭和十八”, 우측은 “昭和十七”이다. 국편 소장 제18, 19책, 아연 소장의 13책은 “昭和十八”이고 아연 소장의 11책은 “昭和十

七”, 207쪽). 현존 기록에 대한 해제는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 II』, 331-334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稀貴文獻 解題』, 383-386쪽 참조.

七”이다. 또한 보존기한(“二十年”)의 서체와 ‘保存終期’의 숫자 표기 방식(“四十”과 “四〇”)이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록은 표지 우단에 나와 있듯이 “경성지방법원(검사국)”이 편철한 이관술 등의 “刑事第一審訴訟記録”이다(제2책과 다른 책에는 “京城地方法院” 옆에 “(檢事局)”이 인쇄되어 있으나, 제5책은 소장기관이 새로 제본함에 따라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림 2〉 1932년 『사상에 관한 정보(思想ニ關スル情報)』의 표지



* 설명 : 좌측은 ‘국편 자료 B’, 우측은 ‘아연 자료’이다(둘 다 웹 데이터 출력본이다). 표지에 ‘서무기록’이란 분류 아래 ‘연도’, 편철기관 ‘경성지방법원검사국’, ‘명칭’, ‘보존종별’, ‘보존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같은 양식으로 정리된 동일한 기록군이며 필체도 같다. 좌측은 주로 1932년 10월에 접수한 문서들이, 우측은 주로 동년 11월에 접수된 문서들이 편철되었다. 현재 1932년 『思想ニ關スル情報』는 6월분, 9~12월분이 남아 있다.¹⁵⁾

- 15) 필자는 지난 글에서 아연과 국편의 자료를 합쳐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1932년 12월 접수 분을 예로 들었으나 『식민지 불온열전』, 282쪽),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국내외 항일운동문서의 “思想에

다음으로 ‘아연 자료’와 ‘국편 자료 B’를 비교해보자. ‘아연 자료’ 중 ‘신문조서’류를 제외한 기록(총 147권 중 1~77권, 144권 합 78권, 전체의 53%) 중에는 다양한 정보기관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통보한 것들이 많다. ‘국편 자료 B’ 역시 마찬가지다. 이 중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주로 관내 경찰서로부터 보고 받은 정보를 편철한 『사상에 관한 정보(思想ニ關スル情報)』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가 동일한 기록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양 기관에는 ‘사상에 관한 정보’류 외에도 ‘경찰정보’류, ‘선내(鮮內) 검사국 정보’류에서도 시기상 이웃하는 기록들이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역시 ‘아연 자료’와 ‘국편 자료 B’도 현재 소장기관에서 부여한 명칭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록군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볼 수 있다. ‘아연 자료’가 ‘국편 자료 A’ 및 ‘국편 자료 B’와 동일한 기록군이라면 ‘국편 자료 A’와 ‘국편 자료 B’도 동일한 기록군이다. 그런데 ‘아연 자료’ 자체가 여러 곳에서 수집된 기록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여기서 ‘동일한 기록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기록학에서 ‘기록군’이란 “하나의 조직이나 가족, 개인이 생산·수집한 전체 기록”을 말한다. 이때 ‘생산(자)’은 기록을 실제 생산하는 ‘작성(자)’과 다르다. 생산자란 기록을 생산 축적 유지하는 데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¹⁷⁾ 이 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기록군’의 의미는 소장처나 작성자의 일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직이 생산 축적 유지한 기록군’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편 자료 A’와 ‘국편 자료 B’는 동일한 기록군인가? 국편은

關한 情報(2)(표 2의 국편 110)이 12월 접수 분이다. 1932년 ‘사상에 관한 정보’ 중에 지금까지 확인된 누락분은 1~5월, 7~8월분이다.

16) 동일한 기록군이지만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연 자료’ 42 『治安概況』(京畿道警察部, 1929.5)이 국편 자료 B 268(MF8310)과 동일하다.

17)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55 및 147쪽.

전자를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¹⁸⁾ 후자는 1996년 대검찰청에서 수집하였다.¹⁹⁾ 더욱이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하면 겉보기에도 양식이 달라서 동일한 기록군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재판소와 검사국의 기록 관리를 이해하면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총독부 재판소 급 검사국 서기과 처무규정(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書記課處務規程, 1937.8, 總訓56호)에 따르면²⁰⁾ 재판소와 검사국의 기록은 두 가지로 나뉜다. “행정사무에 관한 기록을 서무기록(庶務記錄)이라 하고 재판 및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을 사건기록(事件記錄)이라 한다”(제17조). 서무기록은 “예규에 관한 기록”에서 “잡사(雜事)에 관한 기록”까지 총 27가지로 분류됐는데(제18조)²¹⁾, ‘국편 자료 B’는 3장에서 보

- 18) 이상일,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자료 수집현황과 과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27, 2001, 101쪽. ‘국편 자료 A’에 대해서는 당시 국편 위원장(박영석)이 “서울지방검찰청의 문서보관 사실을 청문”하고 검사장, 총무처장관 등의 협조를 얻어 “재판기록 1,999책”을 인수하였다고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국사편찬위원회, 2012, 189쪽). 누구로부터 청문하였을까. 국편이 인수하기 전에 이 기록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연구자로 윤경로가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썼던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一志社, 1990)의 서론에 “그 동안 서울지방검찰청 지하창고에 있던 것을 1984년말 동 검찰청 기록관리과에서 일제시대부터 해방 전후한 재판기록 일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때 총 660건 1,204권에 달하는 방대한 재판기록문서가 발굴, 정리되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이관되어 있다”고 했다(12쪽).
- 19) 이상일,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운동자료 수집현황과 과제」, 117쪽. 기록 인수를 담당했던 이상일은 당시 대검찰청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언론에 공개한 ‘정보보고문서’ 기사를 보고 대검찰청을 찾아가 자료 인수를 교섭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6년 8월 15일자 31면에 「東亞日報 일장기 말소, 日警 “日帝 증오해 저지른 일” 분석—大檢, 당시 정보보고문서 공개」란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는데 ‘조선출판경찰월보철’ ‘이재명 등의 모살미수 사건’의 기록 표지 사진이 실렸다.
- 20) 이하 규정 내용은 朝鮮總督府編纂, 『朝鮮法令輯覽』 上卷 第6輯, 1940, 2-5쪽 참조.
- 21) 2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예규에 관한 기록(이하 ‘예 관한 기록’ 생략) 2. 기밀사항 3. 재판소의 구성 4. 감독사무 5. 호적사무 6. 감옥의 감독사무 7. 典禮 및 交際 8. 현재 직원이력서철 9. 非현재직원이력서철 10. 직원의 진퇴 기타 신분 11. 공증인의 신분 12. 변호사의 신분 13. 관리가 아닌 집달리직무취급자의 신분 14. 司法書士의 신분 15. 판사징계처분 16. 검사징계처분 17. 공증인징계처분 18. 변호사징계처분 19. 회동, 순회, 출장 20. 민사 21. 형사 22. 검찰사무 23. 사형집행

듯이 작성자는 여럿이지만 거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생산(접수 또는 작성) 보관한 '서무기록'에 해당한다(앞의 <그림2>에도 상단에 '庶務記錄'이란 분류명이 보인다).

사건기록은 사건별로 편철하고 기록호(記錄號)를 부여한다(제20, 21조). 사건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나뉘는데, 형사사건이 완결되었을 때 기록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일심형사사건(第一審刑事事件)이 완결되었을 때 서기는 속히 소송기록(訴訟記錄) 및 재판서(裁判書)를 검사국에 송부해야 한다. 상소가 완결되었을 때는 그 소송기록은 재판의 등본과 함께 그 심급의 검사국에 송부하고 그 검사국은 하급심의 검사국을 거쳐 원 재판소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일심재판소는 반환을 받는 기록 및 재판의 등본을 제일심검사국에 송부해야 한다”(제44조).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기록은 처음 사건을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한 제일심검사국, 즉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부되어 보존된다. 이는 지방 법원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민사사건의 경우와 다르다(제45조).²²⁾ '국편 자료 A'는 거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불기소한 사건기록으로 기록호가 붙어있다. 다만 서무기록의 경우와 달리 표지의 분류명에 '사건기록'이 명기된 경우는 드물고²³⁾, 주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不起訴事件記錄)' '형사제일심소송기록(刑事第一審訴訟記錄)' '형사공소소송기록(刑事控訴訴訟記錄)' '형사상고소송기록(刑事上告

24. 恩赦 25. 통계 26. 회계 27. 雜事. 이상의 기록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22) 기록을 폐기할 때에도 민사 기록의 폐기는 재판소장, 형사 기록의 폐기는 검사국장이 인가했다(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書類保存規程(1918.1, 總訓1호/개정 1939.8, 44호) 제22조(朝鮮總督府編纂, 『朝鮮法令輯覽』上卷 第6輯, 1940, 6쪽)).

23)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에서 편철한 '형사공소사건재판원 본철 제1책(MF7520)의 표지 분류명이 '사건기록'이다.

訴訟記錄'으로 나뉜다. 기록 표지에는 각각 주관기관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이 명기되어 있지만 위의 규정에 따라 최초 기소자인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록을 보관하였다. 대부분 '형사제일심소송기록'이지만 상소한 경우는 상급 법원의 기록까지 함께 편철되어 있다.²⁴⁾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편 자료 A'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 기록, '국편 자료 B'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서무기록으로 동일한 조직이 생산 접수하여 보관한 기록군이다. '아연 자료'도 동일한 기록군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록군이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분산된 것일까?

필자는 이전 글에서 대강의 경위를 추적하고 이유를 추정해보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²⁵⁾ 해방 이후 1948년 법원과 검찰청이 분리되면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서울지방검찰청이 되었고 기록도 승계됐을 것이다. 1960~70년대 아연의 김준엽·김창순은 공산주의운동 연구를 위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 중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자료와 방증 문헌을 선별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5』(1967~1976)와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 1~2』(1979~1980)를 펴냈고, 이후 이 기록 원본은 아연에 보관됐다. 국편은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아연이 수집하고 남은 기록 중 사건기록을 수집하였고, 1996년 대검찰청에서 남은 서무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로 볼 때 서무기록은 1985년 이후 언젠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됐던 것 같다. 현존 경

24) 대표적인 예가 1925년 辛日鎔, 金東成, 金炯元의 '치안유지법 및 신문지법 위반 사건'(MF7895)으로 일심(경성지방법원) - 공소(경성복심법원) - 상고(고등법원)로 진행됨에 따라 각각의 소송기록이 함께 합본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 I』, 47쪽;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시대별 > 일제강점기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 일제하 사회·사상운동자료 > 辛日鎔 外 2名 (治安維持法違反, 新聞紙法違反).

25) 정병욱, 『식민지 불온열전』, 216-224쪽.

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들의 보존기한은 최대 20년으로 일제강점기 또는 해방 이후 곧 폐기되어야 했다. 폐기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었던 ‘특별한 사유’는 무엇일까.²⁶⁾ 이 기록군은 공산주의 민족주의 등 사상범·사상사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식민지 시기의 사상통제 기조가 해방 이후 분단체제하에서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아연의 기록 원본 입수 과정이다. 아연은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1962년 9월부터 ‘북한공산권 연구’를 시작했는데, 1967년 출판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1권이 ‘북한공산권연구총서’ 제1권이다. 같은 해에 나온 총서 제4권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이 눈에 띈다. 제1장 ‘해방전 시기의 공산주의운동’은 총서 제1권과 겹치지 않도록 주로 ‘파벌투쟁’을 중심으로 개관했다고 하는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서무기록과 사건기록을 많이 이용하였다. 저자는 방인후(方仁厚)로 당시 대검찰청 수사관이자 아연 연구원으로 대검찰청 수사국의 『좌익사건실록』 편찬도 담당하였다.²⁷⁾

『한국공산주의운동사』와 그 자료편 발간에 줄곧 참여했던 관계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연 공산권연구 분과에 참여했던 검찰청 인사를 통해서 1963년경 검찰청의 “폐기문서 창고”에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했다고 한다. “신문조서”(즉, 사건기록)는 기존 관련 문헌에서

26) 일제강점기 재판소 및 검사국 서류 보존규정 제7조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 후라도 그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朝鮮總督府編纂, 『朝鮮法令輯覽』 上卷 第6輯, 6쪽). 주지하다시피 1948년 12월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보면 내란 및 外禍의 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이 기본이다(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참조).

27)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7의 「研究叢書」 第一輯을 刊行하면서, 「序文」, 제1장(9-78쪽) 및 「北韓共產產圈研究叢書」 간행후기; 『東亞日報』 1968년 7월13일자 5면, 「販禁解題된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봤던 주요 활동가를 중심으로, “정보철”(즉, 서무기록)은 공산주의 운동과 관계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했고, 그 선별 목록에 따라 검찰청 인사가 연구소에 올 때마다 조금씩 가져오는 식으로 입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별한 것이 다 수집되지는 않았다. 한 예로 ‘김철수(金鋳洙) 신문조서’는 선별했으나 고려대학교에 필사본이 있다는 이유로 입수되지 못했다고 한다.²⁸⁾ 이때 남은 김철수의 사건기록은 1985년 국편에서 인수했다.²⁹⁾

이로써 경성지방방법원 검사국의 기록이 한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1960년대 초부터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 이웃하는 기록들이 함께 수집되지 못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그때까지 공산주의 연구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비공식적인 자료 입수로 조사나 이관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폐기문서 창고에서 기록이 소실되거나 원질서가 흐트러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연이 수집한 뒤 남은 서무기록이 대검찰청으로 이관된 시기는 1985년 이전일 가능성도 있다. 1960년대 초중반 아연이 수집한 뒤 국편이 다시 수집하기까지 자료의 행방은

28) A씨와 전화 인터뷰(2014.2.28., 2014.3.25.). A씨는 ‘신문조서 필사본’에 대해 이인, 김병로 등이 변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필사한 것이라 한다. 김병로에 의하면 ‘사상범’ 변호를 위한 ‘형사공동연구회’에 같이 참여했던 김영훈이 사상범에 대한 기록을 고려대학교에 기증했다고 한다(金炳魯 등, 「島山을 말한다(좌담)」, 『새벽』, 1960.11, 32쪽). 이 필사본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지만, 한적실에서 청구기호 ‘貴 2160 19’로 약 40여 책이 소장되어 있음을 이번에 확인했다. 김철수 건은 ‘치안유지법위반 피의자조서’란 제목으로 총 3권(貴 2160 19 3.1~3.2)이다.

A씨는 자료 인지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공산권연구를 같이하면서 봤던 책으로 로버트 A. 스칼라피노·李庭植, 『韓國 共產主義 運動의 起原』(韓國研究圖書館, 1961)이 있는데, 그 책에 ‘여운형 신문조서’가 인용되었다(인용 자료: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朝鮮思想運動調查資料」第2輯, 1933.3). 그 원본을 찾을 수 없을까 얘기하던 중 검찰청 인사가 원본이 있다고 해서 폐기문서 창고에 가 보게 되었다. 현재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된 로버트 A. 스칼라피노·李庭植의 책 중 등록번호 ‘471000894’는 원래 아연 도서관 소장본인데, 5쪽 해당 인용 자료에 누군가가 밑줄을 그었다. 이외에도 여러 자료명에 표시를 해두었다.

29)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사회·사상운동자료 해제 I』, 201-211쪽.

아직까지 확정하기 어렵다.

3. 서무기록을 통해 본 ‘사상부’의 설치와 정보수집 체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서무기록은 아연(고려대)에 77권, 국편에 286권이 소장되어 있다. 일제시기 검사국의 서무기록 27가지³⁰⁾와 비교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사나 회계와 같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서류가 없거나 적다. 둘째, 치안이나 사상 관련 정보나 사건에 관한 것이 많다. 이 서무기록은 검사국 전반이 아니라 검사국 안의 특수 업무와 관련된 기록인 것 같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잡서·잡문서철’이다. 이 부류는 국편에만 7권이 소장되어 있는데(국편 230~236), 그 내용을 보면 접수문서이건 발송문서이건 치안유지법위반사건 문서나 사상관련 정보의 송부에 관한 것이 많다. ‘잡(雜)’은 전혀 잡스럽지 않고 ‘사상’에 집중되었다. 서무기록의 편철기관명이 대부분 “경성지방법원검사국”이지만, 어떤 경우는 “경성지방법원검사국사상부(京城地方法院檢事局思想部)” “경지검(京地檢) 사상계”라 표기된 경우도 있다.³¹⁾ 또한 표지에 “思”가 찍힌 기록도 있으며 발신자, 수신자에 “사상계검사”와 “경성지방법원검사국사상부”란 지위와 소속이 보인다(〈표 2〉 참조).

기존 연구를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28년에 식민지조선의 고등법원검사국과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사상사건을 전담하는 사상계 검

30) 앞의 주 21 참조.

31) 전자의 경우로 국편 자료 B 107 『思想에 關한 情報 副本』(1931.1~4), 후자의 경우로 국편 자료 B 126~128 『思想ニ關スル情報』를 들 수 있다. 모두 한국사태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원문 표지를 볼 수 있다.

사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당시 신문, 잡지의 관련 기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28년 전후 사상계(思想係)검사 관련 주요 기사

연월일	지면 명	기사제목(주요 내용 발췌)
1927.05.06	동아일보	사상운동취체 전문검사 特置, 팔월경부터 실시? (경성지방법원검사정 談 : 복심과 지방법원의 검사국 겸무)
1927.08.26	중외일보	검사국내의 思想係 설치, 이미 그 준비행동으로 植山통역 고등과견습(植山서기, 思想係 전임서기로서 경기도경찰부 고등과에 임시근무하면서 사상운동 관련자 명부 작성)
1927.10.26	동아일보	豫審係에도 思想係 신설, 要視察人名簿도 作成, 각 단체 내용 엄밀조사
1928.01.13	중외일보	사상범 격증의 대책, 사상전임검사 임명, 사법당국에서 엄중 취체 전제로, 조선현실을 말하는 사실(경성복심법원 판사 伊藤憲郎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로 임명)
1928.01	조선사법협회 잡지	본년 1월부터 고등법원검사국에서 專任職을 두고 조선 의 사상문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7-2호 103쪽]
1928.02.23	동아일보	사상관계사건은 伊藤判事가 전담, 예산문제로 전문검사는 불치, 總督府 法務局의 決定(사상전문검사 임명은 예산관 계로 실시 못해, 경성복심법원판사 伊藤憲郎를 고등법원 검무로 임명)
1928.05.04	동아일보	사십만원경비로 사상전문검사 배치, 귀임한 淺利경무국장 담, 고등경찰 일층 충실(내무성 사상취체를 위한 추가예 산 200만원 편입, 그 중 40만원 조선에 계상. 5만원은 사상관계 전문검사 배치비, 35만원은 고등경찰 충실비로 쓸 것)
1928.06.07	중외일보	思想專門檢事,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우선 森浦(藤郎)씨 한명을 두어(전 조선을 통해 사상전문검사는 고등법원의 伊藤 외에는 경성지방법원이 처음)
1928.07.08	중외일보	朝共 최후 공판, 최초의 사상검사 입회, 검사는 징역 이 년 구형(경성지방법원, 森浦 사상검사)
1928.07.11	조선사법협회 잡지	조선의 사상취체경찰방면의 직원, 칙령으로 증원[7-8호 95쪽. 원자료 7월11일자 관보]

32) 장신,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96-97쪽; 水野直樹, 「植民地期朝鮮의 思想檢事」, 387-388쪽.

1928.08.30	조선사법협회 잡지	조선에서 사상취체를 위해 전임검사 이하 직원, 칙령 (1928년 칙령 216호)으로 증원[7-9호 94쪽, 원자료 8월 31일자 관보]
1928.08	동아법정신문	‘高等法院民事刑事部構成’-형사부, 민사부, 검사국, 검사 분실. 檢事分室(思想係) : 檢事 伊藤憲郎, 書記長 山口吸 -[173호, 49쪽]
1928.09.17	조선사법협회 잡지	사상계검사 회동, 사법성에서 열려. 조선에서 伊藤, 森浦 양 검사 출석[7-10호 94쪽]
1928.10.20.~22	조선사법협회 잡지	내지 사상계검사 關, 德江 양씨 조선시찰 [7-11호, 100쪽]
1928.11.22	동아일보	대구법원에도 사상전문검사 (사상취체 전문검사로 경주지청에 근무하는 酒井검사*가 전임)
1928.12	조선사법협회 잡지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治安維持法提案討議』 발간 [7-12호, 110쪽]

* 비고 : “ () ”는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는 해당 잡지의 호수와 쪽수이다. “酒井”검사는 “酒見(綴次)”의 오식인 것 같다.

관보에 의하면 경성복심법원판사 이토 겐로(伊藤憲郎)가 1927년 12월 27일자로 검사에 임명되면서 평양복심법원검사 겸 고등법원 검사로 보직되었다.³³⁾ 이 경우를 사상계 검사 배치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지만, 이후 이토가 사상통제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하다. 모리우라 후지오(森浦藤郎)는 1928년 5월 11일자로 경성지방법원검사로 보직되었다.³⁴⁾ 이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 처음부터 사상계 검사로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검사분실(사상계)”이 고등법원의 구성 표에 등장하며, 마침내 사상검사 등의 증원이 칙령으로 확정됐다. 같은 해 9월 이토와 모리우라는 일본 사법성에서 열린 사상계검사 회동에 참석했다.³⁵⁾ 같은 해 12월 1일에 이토 겐로는 『治安維持法提案討議(치안

33) 『朝鮮總督府官報』 1928.1.9. 제305호의 「敍任及辭令」.

34) 『朝鮮總督府官報』 1928.5.12. 제409호의 「敍任及辭令」.

35)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두 검사국 사상계검사(伊藤憲郎, 三浦藤郎)의 협조관계가 눈에 띈다. 간도출장에 동행하거나 ‘공산당제건사건’ 기소결정을 분담했다(『동

유지법제안토의)』를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의 이름으로 편찬, 발간했다.³⁶⁾ 고등법원의 예에 따른 듯 1929년경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 중에 “경성지방법원검사분실”이란 편철자명도 보이며³⁷⁾, 1930년에는 팸플릿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을 “경성지방법원검사국사상부”란 이름으로 인쇄했다. 또한 1930, 31년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계 검사의 소속명으로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사상부”가 자주 쓰였다.(〈표2〉 참조)

1928년 사상계 검사와 검사분실, 사상부³⁸⁾의 등장은 조선에서 ‘사상’ 탄압·통제의 지휘부가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³⁹⁾ 이는 그만큼 조선인의 ‘사상’운동이 치열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김병로

아일보』 1930년 11월 11일자 2면, 「判事歸任後에 間島事件着手」; 같은 신문 1931년 10월 16일자 2면, 「今日內로 決定될 共產黨再建事件」).

36) 이 책 서문은 1928년 11월 “고등법원 檢事分室”에서 伊藤憲郎가 썼다(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編纂, 『治安維持法提案討議』, 1928.12의 「序」 참조).

37) 국편 자료 B 58 『朝鮮思想通信(昭和4年1月分)』, 同 154 『治安維持法違反豫審中 被告人調(昭和4年)』가 그 예이다. 물론 편철자명이 후대에 부여된 경우도 있다. 『情報綴第1冊(1925.1~8)』(아연30)의 경우 편철되지 않은 채로 끼여져 있는 목차에 “京城地方法院檢事分室”이 찍혀있다. 이는 1929년경 사상부가 설치되면서 전대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날인된 것 같다.

38) 식민지조선에서 검사국의 “思想部”가 규정에 나오는 정식 명칭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로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팸플릿이나 『사상월보』 『사상회보』와 같은 잡지의 편자로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경성지방법원검사국사상부”가 기록에 편철자명으로 나오는 경우는 ‘국편 자료 B’ 중 57(1942.3년), 107(1931년), 162(1934년) 정도다. 사상계 검사의 소속명으로 쓰인 경우는 1930, 1931년이다.(표2 참조). 또한 “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의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齊藤榮治 編纂, 『高等法院檢事長訓示通牒類纂』, 1942, 478쪽의 「裁判書送付方ノ件」(1934.3.26. 高檢720호)에 나오는 “當局思想部” 등). 1935년경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지방법원의 ‘思想部’ 신설 논의는 지방법원 ‘刑事部’에서 ‘사상부’를 독립시키려는 것으로, 검사국 사상부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관련은 모호하다. 또한 ‘思想係’는 주로 검사의 전문분야를 지칭하지만 때로는 부서명, 조직명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두 명칭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39) 장신은 1928년을 치안유지법과 이를 운용하는 고등경찰, 사상관검사라는 “사상통제의 기본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해로 보았다(장신,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98쪽).

의 표현을 빌자면 “사상운동이 있을 때 사상사건이 생기고, 사상사건이 너무 자주 생기면 나중에 사상부가 생겨 전임하는 관검사까지 있게” 된 것이다.⁴⁰⁾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사상운동이 증가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사상계 검사가 등장하기 전에 전담서기/직원들이 사상단속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예산이 확보되거나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 사상계 검사들이 배치되었다는 점도 그만큼 처리해야 할 사상관련 사건이 많았음을 반영한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 특히 서무기록은 ‘사상’ 탄압·통제의 지휘부가 수립되기까지 기록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준다. 1920년대 전반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정보 수집 양상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23년 편철기록 『정보(情報)』 세 권이다(아연 자료 27~29). 세 권이 원래 분철된 것인지 소장기관에서 분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표지는 27권에만 남아 있다. 정보 제공처에 따라 27권은 ‘헌병대의 부(部)’, ‘경찰서의 부’, 28권은 ‘경무국의 부’, 29권은 ‘경찰부(警察部)의 부’로 나뉘며 각각 시작 면에 속지가 있다. 1923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관내 헌병대, 경찰서, 경찰부와 경무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사안별로 정리하여 통보한 경무국, 주기적인 도내 민정 보고 형식의 경찰부와 달리 헌병대와 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보고했다. 이 두 기관의 일상적 보고는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우선 분량이 적었다. 관내 경찰서의 1년 보고가 900여 쪽에 불과했다. 또한 내용이 잡다했다. 조선인 동향이나 공산주의운동과 관련된 것도 많았지만 유명 조선인의 가정 문제, 패싸움, 불법 주식중매, 범죄, 사기와 같은 것도 포함되었다.

이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서무기록은 정보제공 기관별로 편철되었던 것 같다.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경무국의 정보는 1920년대 후반

40) 金炳魯, 「半島의 思想判檢事陣, 高等·覆審·地方의 三法院을 通하여」, 『삼천리』 7-3호, 1935.3, 40-44쪽.

까지 계속 『정보(철)』로 편철되었으며 1930년대 초에는 제목 “정보” 앞에 “경무국(장)”이 붙는다. 헌병대의 경우 남은 기록이 많지 않아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1930년대 초반의 기록은 경무국처럼 『헌병대 정보』라는 제목으로 편철됐다. 경찰부의 경우는 해당 경찰부가 연례적으로 작성한 『관내상황』 『치안개황』 『치안정황』 등이 검사국에 송부되었고 검사국은 그 제목 그대로 편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관할 경찰서의 정보 기록이다. 1924년~1926년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行政)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 1926~1929년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 1930~1934년 『사상에 관한 정보(思想ニ關スル情報(綴))』라는 제목으로 편철됐다. 제목을 달리 하지만 모두 경기도, 강원도의 관할 경찰서에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통보한 문서가 수록됐으며, 검사국은 그 중 일부를 다시 고등법원 및 복심법원과 법무국에 송부했다(〈표 2〉 참조).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시행, 1928년 사상계 검사와 사상부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 보고는 우선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해마다 1,000쪽이 넘는 경우가 많아 몇 권으로 분철됐으며 1930년에는 월 단위로 분철됐다. 더욱이 내용을 보면 ‘사상’으로 집중되었다. 1924~25년까지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에는 이전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섞여 있었다. 1926년에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국편 93)가 등장하면서 ‘사상’ 관련 정보는 이에 집중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국편 94)은 “민정사찰(民情査察)에 관한 기록”의 부제가 붙었다. 1926년 동일 시기의 두 기록을 비교해보면 아직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사상운동, 사상단체의 동향은 전자에 집중되고 있음이 뚜렷하다. 이전까지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에 실렸던 ‘조선노동총동맹’ 관련 보고는 이제 ‘사상’으로 시작되는 기록류에서만 보인다. ‘사상’이 일반 ‘민정’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표 2〉 경성지방법원검사국의
서무기록 중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 보고'류(1924~1934)

기록명	표지		수록시기 (발송일)	비고	소장처/ 번호
	연도	편철기관/인			
行政檢察事務ニ關スル 記録〔(1)〕	1924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3.12 ~1924.07		국편89
行政檢察事務ニ關スル 記録 第二 〔(2)〕	1924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4.08 ~1924.12		국편90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 〔(1)〕	1925.01 ~08		1925.01 ~1925.09		국편92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 〔(2)〕	1925		1925.04 ~1925.12		국편91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 〔(3)〕 民精査察ニ關スル文書	1926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	1926.01 ~1926.12	丁, 보존 5년	국편94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1)〕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1925.12 ~1926.06		국편93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2)〕	1926.01 ~27.06	㉠	1926.02 ~1927.06		국편95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3)〕	1927.07 ~27.12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	1927.05 ~1927.12		국편96
思想~ 〔思想問題ニ關スル調 査書類(4)〕		京城~	1928.01 ~1928.09	~ 이하 판독불 능	국편97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 二〔(5)〕	1928.10 ~28.12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	1928.10 ~1928.12	보존 5년	국편98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6)〕	1929.01 ~29.03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29.01 ~1929.03		국편99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7)〕			1929.04 ~1929.07		국편100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 書類	1929.07 ~29.09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29.07~09		아연10
思想ニ關スル書類 〔(1)〕			1930.01 ~1930.12		국편101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一冊			1929.11 ~1930.01	주로 1월분	국편102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二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1 ~1930.02	주로 2월분 공열(供閱) 思想 界檢事 → 高等 法院檢事長/檢 事, 覆審法院檢 事長/檢事	국편103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三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2 ~1930.03	주로 3월분 공열 京城地方 法院檢事局思 想部 思想界檢 事 → 上同	아연11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四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3 ~1930.04	주로 4월분 上同 → 上同	아연12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五冊			1930.04 ~1930.05	주로 5월분 上同 → 上同	아연13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六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5 ~1930.06	주로 6월분 上同 → 上同	국편104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七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6 ~1930.07	주로 7월분 上同 → 上同	국편105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九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8 ~1930.09	주로 9월분 上同 → 上同	아연14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十冊		京城地方法院 ^秘	1930.09 ~1930.10	주로 10월분 上同 → 上同	국편106
思想ニ關スル情報 副本	1931.01 ~31.04	京城地方法院檢 事局思想部	1931.01 ~1931.04		국편107
思想ニ關スル情報綴 [(1)]	1931.09	京城地方法院~	1931.09	~ 이하 판독불 능 上同 → 上同	국편108
思想ニ關スル情報 [(1)]	1931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1.09 ~1931.12		국편109
思想ニ關スル情報綴	1931.10	~	1931.10	上同 → 上同	아연15
思想ニ關スル情報	1932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2.10 ~1932.11	丙 보존 10년 공열(供閱) :京 城地方法院檢 事局 思想係檢 事 → 上同	아연16

思想ニ關スル情報 [(2)]	1932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2.11 ~1932.12	주로 12월분 上同 → 上同 丙 보존 10년	국편110
思想ニ關スル情報 [(3)]	1932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2.05 ~1932.06	주로 6월분 上同 → 上同 丙 보존 10년	국편111
思想ニ關スル情報 [(4)]	1932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2.08 ~1932.09	주로 9월분 上同 → 上同	국편112
思想ニ關スル情報 [(5)]	1932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2.09 ~1932.10	주로 10월분 上同 → 上同	국편113
思想ニ關スル情報(警 察)	1933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2.12 ~1933.02	주로 1, 2월분 上同 → 上同	국편114
思想ニ關スル情報	1933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3.02 ~1933.04	주로 3,4월 上同 → 上同	아연17
思想ニ關スル情報	1933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3.05	上同 → 上同	국편161
思想ニ關スル情報綴 [(2)]	1933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3.05 ~1933.07	丙 보존 10년 上同 → 上同	국편115
思想ニ關スル情報 [(6)]	1933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3.04 ~1933.12		국편116
思想ニ關スル情報 [(7)]	1933, 34	京城地方法院檢 事局	1933.12 ~1934.06	上同 → 上同	국편117

- * 출전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稀貴文獻 解題 -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秘密紀錄』, 高麗大學校出版部, 199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http://library.history.go.kr>)의 청구기호 “367.2 대13”의 자료
- * 비고 : 아연의 번호는 위의 해제에 부여된 번호이다. 국편의 번호는 건별 번호다. 예를 들어 청구기호 “한367.2 대13 v.110”의 기록은 “국편 110”으로 표기했다. 원본과 대조하여 기록명 등을 바로잡았다. “ [] ” 안의 내용은 소장처에서 기입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국편 94)에는 이후 시각에서 보면 형평사와 같은 ‘사상’ 계통의 정보가 실려 있다.⁴¹⁾ 초기에 실무자들에게는 ‘사상’ 사건이나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다. 1926년 12월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청의 검사에게 ‘사

41) 京城鐘路警察署長, 1926.04.26 「(京鐘警高秘4047호-2)衡平社中央執行委員會ニ干スル件」,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국편 94), 1926 등.

상에 관한 범죄' 조사 지시를 내리면서 그 범위를 “보안법·대정8년 제령 제7호·치안유지법·대정15년 법률 제60호·출판법 각 위반, 소작쟁의 및 노동쟁의, 기타 소요·공무집행 방해·살인·상해·왕래방해·협박죄 등이라도 사상과 관련해서 주요한 범죄”로 규정했다.⁴²⁾ 사상통제의 지휘부가 형성된 후 그 범위는 좀 더 명확해진다. 1929년경 고등법원검사국에서 “사상계 검사가 직무에 참고할 문서”들을 수록한 『조선사상검찰제요(朝鮮思想檢察提要)-제일책』을 인쇄했는데, 그 중 「사회사상연구조사에 관한 강요(社會思想研究調査に關する綱要)」를 보면 ‘종별적 연구’로 “(1) 정치반대-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독립운동 (2) 사법부인-법정폭행, 항의문 (3) 계급투쟁-노동쟁의, 소작쟁의, 형평운동”을 열거하고 있다. 「지방법원 사상사건검찰 사무장정」에서는 사상계 검사가 담당할 사건으로 “(1) 치안유지법위반 (2)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3) 보안법 위반 (4) 황실에 대한 죄 (5) 내란에 관한 죄 (6) 소요죄 (7) 신문지법 위반 (8) 출판법 위반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10) 폭발물취체벌칙 (11) 기타 사상운동에 관한 범죄”가 언급되었다. 여전히 임의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상’사건이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 보고’에서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사상에 관한 정보[철]』와 같은 ‘사상’ 류가 등장하면서 1927년 이후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원 기록군에서 그랬던 것인지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신문잡지 행정처분에 관한 기록’류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이 “신문지 및 출판물의 취체에 관한 조사서류(新聞紙及出版物ノ取締ニ關スル調査書類)”란 부제를 달고 1926년에서 1929년까지 편철되어 있다(국편 61~67). 또한 1932년에 편철된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이 한 건 있는데, “경미한

42) 法務局長, 1926.12.27. 「思想ニ關スル犯罪調査方針」,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 [(2)]』(국편 95), 1926~1927. 제령 제7호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법률 제60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잡문서(輕微ナル雜文書)”라는 부제를 달았다(국편 146). 놀라운 점은 이 기록에 들어 있는 사건은 사기, 무고, 위증, 폭행 등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살인 사건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것도 있다.⁴³⁾ 이제 검찰의 사무는 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뉘지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 보고’류를 통해 사상계 검사가 배치되기까지 경과를 알 수 있다. 보고 및 회람 문서의 상단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책임자의 공람난이 찍히기 마련인데, ‘검사정(檢事正)’에 이어 1927년 6월경부터는 ‘차석검사’의 난이 마련되었다. 보통 이후에도 사상계 검사 배치되지 않은 지방법원에서는 ‘차석검사’가 ‘사상계’의 업무를 맡았다. 1928년 2월경에는 새로 ‘주임검사’란이 마련되었으며, 사상계 검사가 배치되자 이 해 12월경부터는 ‘주임검사’ 대신 ‘사상계검사’ 난이 보인다. 사상 정보의 담당자가 차석검사 → 주임검사 → 사상계 검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경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이 아니라 사상계 검사가 복심법원 검사정과 고등법원 검사정에 문서를 공람시켰으며, 1930~31년에는 ‘경성지방법원검사국사상부’가 발송자 사상계검사의 소속명으로, 또는 편철자명으로 나온다(〈표 2〉 참조). 이는 1930년 팸플릿 『조선공산당사건』 간행과 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의 확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존 서무기록을 통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의 정보수집 체계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다. 1929년경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인쇄한 『조선 사상검찰제요』에는 지방법원 사상계서기가 사무에 참조해야 할 것으로 「고등법원검사국 사상계서기 사무장정」이 수록되었다.⁴⁴⁾ 사상관계 문서의 발송접수는 검사국 주임서기가 하며, 접수문서 중 “사상계에서만

43) 京城地方法院刑事第一部, 1932.03.04 「昭和7年刑公第1호 判決」, 京城地方法院檢察局,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輕微ナル雜文書)』(국편 146), 1932 등.

44) 高等法院檢察局, 『朝鮮思想檢察提要 - 第一冊』, 1929(?), 3, 20-23쪽.

필요한 것”, “이외 사상계도 공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사상계에서 보존한다.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라 할 수 있다. 서기가 정리해야 할 기록으로 접수문서, 계획문서, 사상계 발행 팸플릿, 사상관련 도서 및 신문잡지류, 장부류, 명부류가 열거되었다. 그밖에도 신문절발첩(新聞切發帖) 및 사상계통도 작성, 각종 사상관계 문서의 정서 및 등사, 사상 연구조사, 사상단속 관현과 연락절충 보조, 이외 사상관계 서무잡무 일체가 사상계 서기의 사무로 규정되었다. 이 장정의 접수문서 분류에 따라 현존 아연과 국편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 중 접수문서를 분류해본 것이 <표 3>이다.

<표 3>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 중 접수문서 분류

고등법원 검사국 '思想係' 접수문서 분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 중 해당 자료			
	편철 기록명	주요 발송자/작성자	소장처	수록 시기
1. 諸情報類	管内各檢事局情報 鮮內檢事局情報[綴], 鮮內情報綴, 思想事件起訴狀決定判決寫綴, 思想ニ關スル情報綴*, 中國共產黨上海支部責任者金命時ニ對スル聽取書寫 등	大田, 平壤, 大邱, 청진, 신의주 등의 지방법원 검사국, 木浦, 開城, 鐵原 등의 지방법원 원지청의 검사국	국편 14건 (132~144, 149)	1932~41
			아연 7.5권 (21~26, 48, 67 일부)	1932~43
警務局情報	檢察[行政]事務ニ關スル記錄, 思想問題ニ關スル調査書類, 思想ニ關スル情報[綴], 思想ニ關スル書類 警察情報[綴], 情報	주로 관내 경찰서	국편 50건 (89~129, 161, 174~181)	1924~40
			아연 11.5권 (10~19, 27일부, 39)	

	情報[綴], 朝鮮治安狀況 在外朝鮮人ノ概況 治安狀況	경무국, 경무국보안과	아연 12권 (28~37, 40, 49)	1922 ~33
			국편 2건(170~71)	1937 ~38
	在中國韓人青年同盟狀 況概要	함경북도, 경무국장 (편철자 : 고등법원검사분실)	아연 1권 (51)	1928 ~31
	‘光州京城ニ於ケル學生 事件’ 등 각종 주제 사 건 보고서류	경무국, 경기도[경찰부], 강원도경찰부, 관할경찰서장	국편 16건 (147~8, 153, 155~160, 163 ~7, 211~2)	1928 ~39
			아연 16권 (55, 58~9, 61~6, 69~75, 77)	1928 ~41
朝鮮 憲兵隊 情報	[憲兵隊]情報	경성 등 각 지역 헌병대[장]	아연 1.5권 (27 일부, 38)	1923, 1933
	晩近ニ於ケル鮮內思想 運動情勢 등	조선헌병대사령부 (편철자 : 고등법원검사국)	아연 1권 50	1928
各道 情報	管内狀況(강원도), 治安 情況(경기도), 治安狀況 (강원도), 治安概況(경기 도)	강원도 (고등)경찰부, 경기도 경찰부	국편 5건 (168, 169, 172, 173, 268)	1924 ~25, 1929
			아연 3권 (41, 42, 44)	1934 ~35, 1938
	支那事變[關係]情報綴, 經濟情報	경기도(경찰부장), 강원도(경 찰부장)	국편 17건 (185~201)	1937 ~40
朝鮮軍 參謀 情報				
警視廳 情報	內地ニ於ケル朝鮮共產 黨事件公判狀況	(日本)警視總監	아연 0.5권 (67 일부)	1930
內地思想 係情報	內地檢事局情報[綴] 司法省情報 豫審終決決定書寫	東京刑事地方裁判所檢事, 名 古屋控訴院檢事, 司法省刑事 局長, 東京地方裁判所 등	국편 8건 (202~209)	1931 ~42
			아연 2권 (20, 60)	1928 ~30

	其他 情報	間島[總]領事情報, 間島[領事館]情報[綴], 間島領事[館]狀報綴, 間島治安概況, 高麗青年會 滿洲總局 東滿道 幹部會員檢舉顛末, 高麗共產青年會東滿道幹部ノ當面問題ニ對スル研究資料, 間島地方共產黨ノ組織方針並運動ノ實狀等ニ關スル件	間島總領事館(警察部)	아연 12.5권 (1~9, 43 일부, 56, 57, 63)	1928 ~37
2. 諺文新聞 抄譯類		諺文[朝鮮文]新聞[抄· 翻]譯[綴], 新聞[朝鮮文] 記事抄譯, 北鮮地方ノ大 水害ニ對スル諺文新聞 ノ論調	경무국장, 경무국 도서관	국편 32건 (75, 87, 238~267)	1923 ~40
3. 思想研究 調査記錄		共產運動研究資料集 第 一卷	(일본 외무성)歐米局第一課	아연 1권(54)	1928
		幸徳秋水及難波大助事 件ニ關與シタル辯護士 令村力三郎ノ兩件ニ對 スル感想錄, 高麗共產青 年會東滿道幹部ノ當面 問題ニ對スル研究資料, 猶犬人及其ノ起源并歐 ケル勢力ノ原因	警務局長, 間島總領事館, 北滿 洲特務機關(翻譯)	국편 2건 (228, 229)	1926
				아연 1권 (57)	1928
4. 新聞雜誌 行政處分에 관한 기록		刊行物行政處分通報 [綴], [新聞紙]出版物行 政處分通報,	警務局 圖書課	국편 16건 (42~57)	1929 ~41
		朝鮮出版警察月報, 新聞 紙[出版物]要覽	警務局 圖書課	국편 40건 (1, 2, 4~41)	1926 ~38

5. 差押 等에 관한 신문잡지기사 기록	支那新聞差押記事概要, 不許可出版物並削除記事 概要 譯文, 諺文新聞不穩記事 概要, 移入輸入不穩刊行物概況, 新聞紙及出版物ノ取締ニ關スル情報[書類],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新聞紙及出版物ノ取締ニ關スル調査書類) 등	警務局 圖書課	국편 27건 (3, 61~74, 76~86, 88)	1926 ~29
6. 統計에 관한 文書 (사상사범에 관한 분만)	高等警察ニ關スル諸統計表	江原道	국편1건 (210)	1929
7. 잡문서 (사상관계)	檢察事務ニ關スル記録(輕微ナル雜文書), 雜書綴	서대문형무소, 각 지방법원, 경무국 등	국편 4건 (146, 230~32)	1924 ~33

* 자료 : 高等法院檢事局, 『朝鮮思想檢察提要-第1冊-』, 1929(?), 20-23;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稀貴文獻 解題-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秘密紀錄-』, 高麗大學校出版部, 199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http://library.history.go.kr>)의 청구기호 “367.2 대13”의 자료

* 설명 : 아연의 번호는 위의 해제에 부여된 번호이다. 국편의 번호는 건별 번호다. 예를 들어 청구기호 “한367.2 대13 v.156”의 기록은 “국편 156”으로 표기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 중 접수문서를 예시된 고등법원검사국 사상계의 접수문서 종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대략 대응이 된다. 이 기록군의 생산자가 검사국 중에서도 사상계 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기록군에 대한 원 질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등법원 검사국의 사상계 문서 분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맥락 없이 간도총영사관의 정보철부터 시작하는 아연의 분류⁴⁵⁾나 경무국 도서과가 발송

45) 부여한 문서번호를 보면 아연은 대략 세 가지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다. 1~39은 100단위, 40~77은 200단위, 나머지 300단위이다. 분류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다수의 출판물 통제 기록을 거친 다음에야 여러 정보류가 등장하는 국편의 분류⁴⁶⁾에 비해 체계적이고 생산자의 활동과 특성이 잘 드러난다.⁴⁷⁾

접수문서를 보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조선과 일본의 검사국, 경무국, 관내 경찰 및 도, 조선헌병대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군 참모’와 ‘경시청’으로부터 접수된 자료가 거의 없는 데, 이 기관들은 고등법원과 달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과는 직접 문서를 주고받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상연구조사기록’은 각 정보기관의 사건별, 주제별 보고를 포함시키면 양이 늘어날 것이다. ‘통계에 관한 문서’가 적은 이유는 통계류가 대부분 영구보존이어서 별도로 보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 접수문서를 볼 때 1923년 『정보』 단계에 비해 앞에서 지적한 관내 경찰서 정보의 증가 및 ‘사상’ 집중과 함께 다음 두 가지 특징을 더

대략 100단위는 일상적인 정보철, 200단위는 정례적 또는 연례 보고서, 사건별 보고서, 300단위는 ‘신문조사’ 즉 사건기록이다(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희귀문헌 해제』 참조).

- 46) 국편은 다음과 같이 17가지로 분류하고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다. 1. 간행물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등 2. 간행물차압 행정통보 서류 3. 조선사상통신 미영인분 4. 차압잡지기사 내용 5. 불온격문 등의 내용 6. 운동에 대한 일상정보 보고, 7. 각종 재판서 / 잡범 서류 / 심문서 8. 특정 사건 종합 보고류 9. 각종 치안상황류 10. 정보 보고/특정사안에 대한 종합보고 11. 중일전쟁 이후 그에 대한 민심동향 등 12. 전시통제체제하의 경제 관련 정보 및 경제사범 관련서류 13. 일본 내의 운동에 대한 정보 14. 검찰,경찰 회의 관계서류(각종 통계, 주요 범죄 등) 15. 훈시, 실무교양강좌 등 16. 복권, 형집행 등 서류 17. 기타 및 잡서철[한상구, 『대검찰청소장자료 중 일제검찰 편철문서 마이크로필름 목록』, (국편) 마이크로필름실, 2000]. 국편 소장 기록에는 “大檢” 번호도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대검찰청과 국편의 기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 “大檢” 번호 순으로 정렬해보면 여전히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러 ‘정보류’가 앞으로 나 오고 출판 통제나 번역문 등이 뒤에 배치된다.
- 47) 접수문서 이외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가 작성한 정보기록 및 기타 서무 기록이 있으며, “朝鮮思想通信” “朝鮮通信” “思想月報”와 같은 사상관련 도서가 있다. 위의 「高等法院檢事局思想係書記事務章程」의 분류를 주로 하고 「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書記課處務規程」(1937.8, 總訓56호)의 서무기록 분류를 참조하면 전체 기록에 대한 분류를 체계화할 수 있다.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과 일본의 검사국으로부터 정보 수집이 활발해져, 1930년대 초에는 조선 내 검사국 또는 일본 검사국의 정보철이 독립 분철됐다. 경찰과 달리 검사국 정보의 경우는 ‘관내’를 넘어서 전 조선과 일본의 검사국에서 문서가 접수되었다. 일본과 조선의 지방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간도관련 업무와 정보의 수집이다. 이는 1923년 『정보』 단계는 물론 1929년경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계서기 사무장정」에도 명기되지 않은 영역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간도와 인접 경찰서 및 검사국으로부터 ‘만주’ 정보가 접수되었으며 1930년대 들어서면 간도총영사관, 동경찰부로부터 상시적으로 정보가 통보되었다. 이는 조선인의 사상운동이 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고, 1930년 이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재간도영사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서⁴⁸⁾ 나타난 현상이다.

4. 기록 명칭에 대하여

이상 검토를 통해 밝힌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편 자료 A’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사건기록, ‘국편 자료 B’는 동 검사국의 서무기록이며, ‘아연 자료’는 동 검사국의 사건기록과 서무기록이 함께 수집된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기록은 동일한 조직, 즉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이 생산 접수하여 보관한 기록군이다. ‘사상’ 탄압·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편철자명이나 열람자·보고자명, 접수문서의 분류로 보건대, 생산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부인 것 같다.

둘째, 1925년 치안유지법 시행과 1928년 사상계 검사의 배치, 사상부

48) 水野直樹, 「植民地期朝鮮の思想檢事」, 389쪽.

의 설치는 서무기록에도 반영되었다. 이전에 비해 관할 경찰서의 일상적인 정보 보고가 많아졌고, 내용이 사상에 집중되었다. 사상 정보는 일반 민정(民情)에서 분리되었으며, '사상(계)' 우선의 기록관리가 이뤄졌다. 이제 검찰의 사무는 사상과 사상 아닌 것으로 나뉘며 전자에 비해 후자는 '경미'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또한 전 조선과 일본의 지방 검사국 간에 사상사건 정보의 공유체계가 구축되었고, 간도관련 정보의 수집이 늘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의 전모와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 목록 작업, 전 시기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 관련 기록군과 비교⁴⁹⁾ 등이 필요하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사상' 탄압·통제, 그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며, 기록군에 나타난 식민지 사회와 삶에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분산의 경위와 현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해방 이후 이 기록군은 시기에 따라 상이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이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과정과 그 활용의 역사를 분단과 반공, 민주화의 도래 등 시대상과 연관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록군의 명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우선 생산자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아연 자료) '경성지방법원'(국편 자료 A) '경성지

49) 국가기록원의 김재순은 "대검찰청 등에서 판결문 등 사건기록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때, 그 동안 남아있었던 일부 신문조서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역사연구 자료로 이관되었다"고 했다(김재순, 「정부수립이전 행형기록 해제」, 『기록보존』 제11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1998, 194쪽). 우선 국가기록원에 각 법원 검사국이 생산자인 기록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동일한 생산자의 기록이라도 국가기록원에 보존된 '재판' 또는 '행형' 기록은 대부분 보존기한이 '영구'이고 이 글에서 다룬 기록은 보존기한이 최대 20년 인 폐기해야 될 기록이다. 따라서 양자는 별도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건이나 인물, 나아가 시대상을 재구성하고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자의 비교 검토, 통합 이해가 필요가 있다(정병욱, 『식민지 불온열전』, 224-225쪽).

방법원’ 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국편 자료 B)이 표기되는데, 경무국은 일부 기록의 작성자이지 생산자는 아니다. 경성지방법원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중 후자가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일제강점기에 검사국은 재판소(법원)에 “병치(併置)”되었다.⁵⁰⁾ 각 단위 법원에 검사국이 있었으니 ‘고등법원 검사국’ ‘복심법원 검사국’ ‘지방법원 검사국’ 하는 식이었다. 그렇더라도 검사국은 법원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병치”라는 말 그대로 독자성을 유지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37년 8월 재판소와 검사국에 별개의 서기과(書記課) 설치이다.⁵¹⁾ 따라서 생산주체를 표기할 때 ‘경성지방법원’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원과 검찰청이 분리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생산 주체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좋다.

기록 내용과 관련해서는 ‘항일독립운동관계 비밀기록’(아연 자료), ‘재판기록’(국편 자료 A)으로 표기되는데, ‘항일독립운동관계’는 자료의 내용, 생산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후대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비밀기록’은 중요성을 부각시켜주는 하나 비밀기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재판기록’은 부분적으로만 옳다. 사건기록에는 검경의 수사에서 재판(공판)에 이르는 과정이 망라되어 있으며, 어떤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로 종료되는 기록도 있다. 이 자료에 대한 속칭으로 ‘신문조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실제 자료의 많은 부분이 검경의 피의자 신문조서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문조서’는 검경의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록이지, 재판 단계의 기록이 아니다.⁵²⁾ 더욱이 ‘재판기록’이라 하면 생산주체로 법원과 판

50) 「朝鮮總督府裁判所令」(1909.10, 勅令236호/개정1937.8, 15호) 제9조 1항 “朝鮮總督府裁判所에 검사국을 併置한다.”(朝鮮總督府編纂, 『朝鮮法令輯覽』上卷 第3輯, 1940, 74쪽). 이 조항은 1909년 10월 공포된 ‘統監府裁判所令’(칙령236호)부터 있었다.

51)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448-449쪽.

52) 재판단계의 판사 신문 과정에서 발행한 기록은 ‘공판조서’라 한다.

사를 떠올리기 싶다. 또한 ‘편철문서’(국편 자료 B)는 기록의 정리 방식과 물리적 특성을 알려주지만 내용과는 무관하여 기록명으로 미흡하다.⁵³⁾

필자가 보기에 이 기록군의 명칭은 당시 규정을 반영하여 전체를 지칭할 때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기록’, 나눠서 지칭할 때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건기록’⁵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무기록’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내용을 드러낸다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상탄압·통제 기록’이 적당하다.

53) ‘편철’에 관해서는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 사전』, 264쪽 참조.

54) 주체를 경성지방법원만 표기하거나 주체 없이 쓸 때는 ‘형사사건기록’이라는 용어도 무방하다. ‘형사사건기록’이란 말에 이미 ‘검사국의 사건기록’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ABSTRACT

Records of the Prosecutor's Office at Gyeongseong District Court(京城地方法院檢事局) and Set up the Department of Ideology(思想部)

Jung, Byung Wook

Three frequently used documents by researchers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Classified Police Record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 the Anti-Japanese Movement 舊 朝鮮總督府 警務局 抗日獨立運動關係 秘密記錄, Trial Records of Gyeongseong District Court 京城地方法院 裁判記錄 and Filed Documents of Gyeongseong District Court 京城地方法院 編綴文書(while the latter two were colle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former was collected by Asiatic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are among the same records group that the Prosecutor's Office of Gyeongseong District Court produced through registration and compilation. As contents related to ideology suppression and thought control were numerous, it could be assumed that most of the materials were produced by the 'Department of Ideology' of the Prosecutor's Office.

By examining the administrative records of the 1920's within this group, the process of how the 'Department of Ideology' was formed is clearly shown. As ideological movements for Korea's independence and revolution grew, execution of regulations was further expanded by the Prosecutor's Office. Since the mid-1920's, information on ideology had been separated from general information, was routinely collected heavily, and was

considered more valuable than the general information. By the end of the 1920's, the term Ideology Prosecutor 思想係 檢事(meaning a prosecutor who specializes in ideology verification) and the named 'Department of Ideology'(思想部) emerged on the records.

Key words : the Prosecutor's Office at Gyeongseong District(京城地方法院檢事局), administrative records, Ideology Prosecutor, Department of Ideology, ideology suppression